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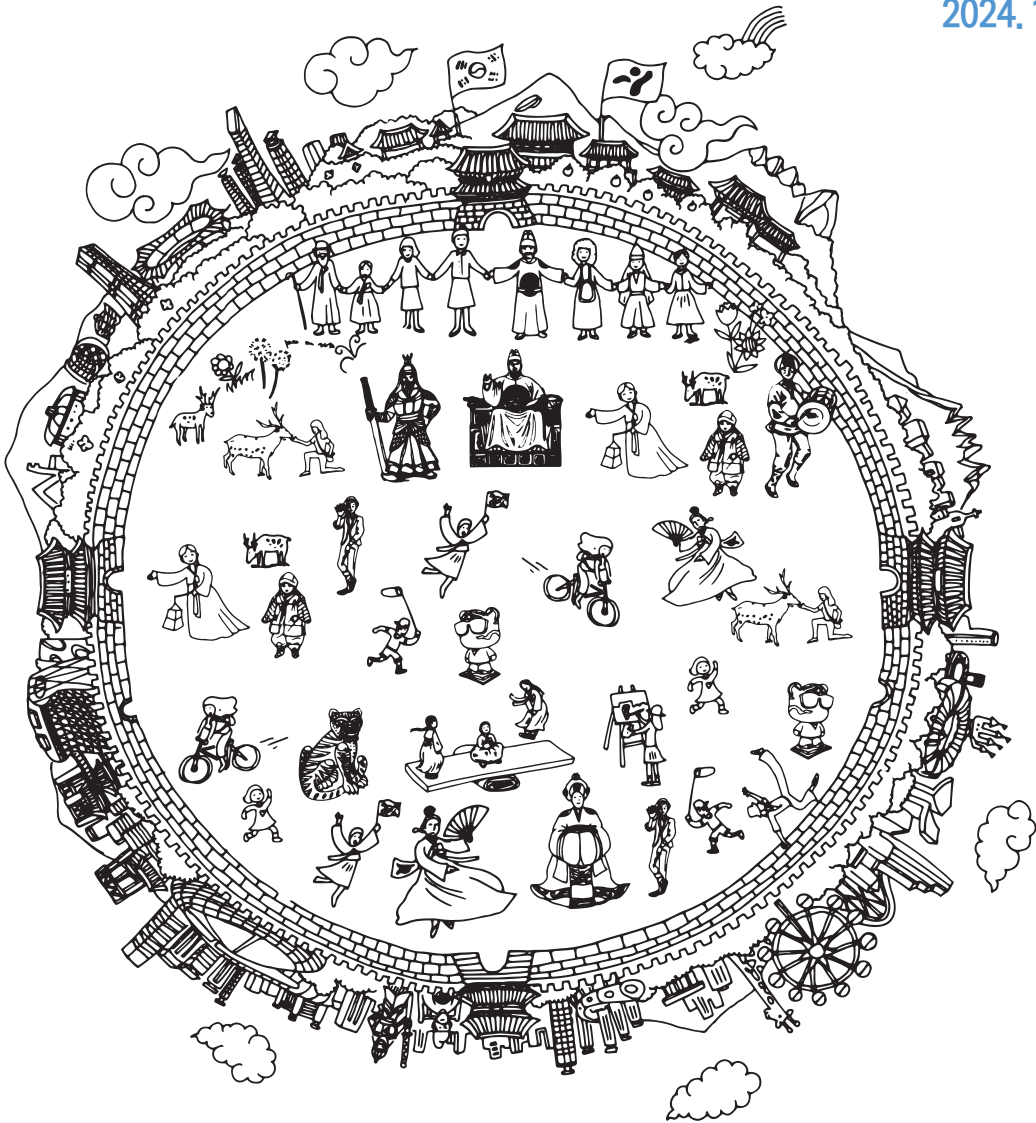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40호
2024. 1. 3.(수)



목 차

◆ 정 정

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2
---	---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939호(2023. 12. 29.)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중 “부지경계선으로부터”를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제34조제1항제8호)

나.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부칙 제1조)

다.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부칙 제2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